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5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5)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6)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0)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7)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0)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6)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5)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2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2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8)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1)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8)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6)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0)
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6)
3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9)
3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8)
3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5)
3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3)
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6)
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4)
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4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4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8)
4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4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4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
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
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3)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6)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0)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1)
 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4)
 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6)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9)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1)
 6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7)
 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
 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
 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7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
 7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7)
 7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8)
 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3)
 7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5)
 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7)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3)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8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6)
 8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7)
 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9)
 8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8)
 8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6)
 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0)
 8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4)
 8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1)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6)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8
4.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13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14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14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14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5)	14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	1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14
12.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14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6)	14
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0)	14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14
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7)	15
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0)	15
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6)	15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5)	15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5)	15
23.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15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15
2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15
2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8)	15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15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1)	15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8)	15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6)	15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3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0)	15
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6)	15
3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9)	15
3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8)	15
3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15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5)	15
3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3)	15
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6)	15
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4)	15
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4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15
4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15
4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8)	15
4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15
4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16
4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	16
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	16
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	16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3)	16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	16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	16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6)	16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	16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	16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	16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0)	16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1)	16
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4)	16
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6)	16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9)	16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6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1)	

.....	16
6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7)	16
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	16
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	16
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16
7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	16
7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7)	16
7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8)	16
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7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3)	16
7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5)	16
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16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7)	16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3)	16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16
8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6)	16
8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7)	16
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9)	16
8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8)	17
8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6)	17
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0)	17
8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4)	17
8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1)	17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6)	17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중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심사 기한이 도래한 청원에 대한 연장의 건을 의결한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 제42회 ICAO 총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한병도 위원 왜 다 웃으시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있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임명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용석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과 광역교통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충분한 교통인프라 공급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관심 덕분에 지난 2019년 저희 대광위 조직이 설립된 이래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교통혼잡 완화, 국민 이동편의 증진 등의 노력을 기울여 K-패스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다만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광위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대상기관과 일정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32개 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두 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감사반을 분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3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할 것과 아울러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35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증인 채택 후 감사대상기관에 인사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되는 것으로 하고 공석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증인은 간사 위원 간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고 발생 등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한 건설사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설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국감 중에라도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복기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잠시만요.

○복기왕 위원 신청된 참고인 가운데서 양치승 참고인의 출석요구일이 서울시 감사일인 10월 20일로 돼 있는데 이 날짜를 10월 13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권영진 위원 김희정 위원이 서울시 국감 때 불렀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청한……

○김희정 위원 지자체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그리고 본부 때는 다른 증인이 많기 때문에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는 날짜를 분배를 했으면 합니다.

○복기왕 위원 분반 때문에 부르신 위원님이……

○김희정 위원 저도 그래서 반을 바꿨습니다, 배정된 반을.

○복기왕 위원 부르신 위원님이 지역이 경기도라 경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요? 아니면 두 군데 다 두 번을 출석을 요구해도 됩니다.

○위원장 맹성규 두 번 하시지요, 그러면.

○복기왕 위원 13일과 서울시 국감.

○김희정 위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부 감사 때는 다른 이슈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더 이 이슈에 집중하고 싶은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더 적절한 기간이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열어 두시고 본부는 서울시든 양당 간사님이 추가 협의를 해서 더 원만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복기왕 위원 그러면 우선 13일, 20일……

○위원장 맹성규 아니, 날짜를 그러면 13일, 20일로 다 하고 간사님 간의 협의에 의해

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예, 두 분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그러면 날짜를 13일, 20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를 해 주세요.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양당 간사님께서 어렵게 조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존중을 하고요. 다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가 김호 전 서기관 그리고 경동의 김수현 상무, 동해 이상화 부사장 이렇게 3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지금 이상화 부사장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김호 전 서기관은 지금 현재 구속 상태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13일 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사실 이 세 사람에 대한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김호 전 서기관이 경동과 동해 측 용역사들에게 ‘편의를 봐줄 테니까 종점 변경해라’라고 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동해하고 경동을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율이 되신다면 종감 때라도 경동의 김수현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일단 간사님들 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고요. 13일 날 저희가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간사님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감 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롯데건설 출석요구일이 13일이 아니고 맨 마지막 날입니다, 29일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29일인데요 이것은 건설사들 한꺼번에 13일 날 같이 부르자고 해서 13일 날로 한 거거든요.

또 이견 있으세요?

지난 5년간 안전사고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안태준 위원** 완전히 다른 이유인데……

○**위원장 맹성규**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를 같이 할까요?

○**복기왕 위원** 전날로 안태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게 국감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태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맹성규** 아니, 안태준 위원님이 의견 제시를 안 하셨어도 어차피 지금 10명 이상 사고 난 건설사를 다 저희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추가로 13일 날 하고 따로 하는 게……

○**안태준 위원**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위원장 맹성규** 어차피 건설사들은 다…… 사고 난 건설사를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양쪽 날을 다 같이 하시든지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그러면 롯데건설은……

○**권영진 위원** 우선 13일로 해 놓고 나중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13일 날 진행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 있으면 종감 때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의견……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양당 간사님 어렵게 합의를 하셨는데 제가 국토부의 해외 ODA 사업 관련해서……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윤종군 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전문가 의견 청취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간사님들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간에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추가로 간사진 간 논의해 보십시오.

박 위원님.

○**박용갑 위원** 참고인으로요 개인택시조합 부산 이사장이 신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대전 이사장으로 이사장만 바꿔 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맹성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용갑 위원** 부산 이사장이 아니라 대전 이사장하고 처음에 카카오하고 협의가 됐었어요.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왜 부산이 들어왔지?

○**박용갑 위원** 결렬이 됐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제가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부산 신청하셨어요?

○**김희정 위원** 예, 제가 관련 법안도 제출했고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신청을 했다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빠진 바 있어서 올해 다시 재차 신청한 참고인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대전 이사장을 추가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대전 개인택시 운송조합 이사장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더 있으세요?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작년에도 국감 때 다뤘던 부분인데 희림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빠져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위원장 맹성규** 희림이요?

○**정준호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관저 때문에?

○**정준호 위원** 예, LH 사업과 관련된 내용……

○**위원장 맹성규** 예?

○정준호 위원 LH 관련된 내용이 또 추가로 있어 가지고……

○위원장 맹성규 LH요?

○정준호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이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문제도 종감 때, 필요하면 종감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논의가 안 된 내용이라.

○복기왕 위원 종감 때 필요하니까 추가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13일 날 다시 또 여야 협상할 거니까……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사님들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

○천준호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중인 신청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말고 이재용 현대건설의 사업관리팀장도 저희가 같이 요청을 했는데 두 분이 같이 나와야 사실은 중인 신문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 부분도 간사님들께 다시 추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13일 날 할 때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천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이 문제는 간사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가 만일에 안 되시면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위원장 맹성규 제가 순서 드릴게요, 잠깐만.

김정재 위원님 하세요.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간사님들이 중인·참고인 조율하고 채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추가를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간사님들하고 각 당에서 한 다음에 간사들끼리 합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정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간사 위원님들이 이 협의를 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간사진 간에 합의된 대로 의결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중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4.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46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께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 맹성규 어디, 어느 것?

○김은혜 위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 맹성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김은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분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위원님.

○김은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22일 국회에 회부가 되면서 현재 소위에도 회부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부동산 공급이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에서의 첫 발을 제대로 떼고 있지 못한바 이번에 소위에서 심도 있게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 회기 내에 청원소위를 꼭 열어서 가시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의견 요청을 드렸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들도 이 문제를 좀 협의를 해서 청원이 심사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일반적 의사진행발언해도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맹성규 예.

○한준호 위원 제가 법안 심사 관련해서 정부 측, 특히 철도국에 한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에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내용이 철도사고 발생 시에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라 이런 법안이었는데 지난 9월 1일 저희가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 사무관 그리고 과장, 철도운행안전과에서 다니면서 이 법안을 본인들 마음대로 상정도 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주장 자체가 뭐냐 하면 재발방지 대책 이행 상황 보고를 기준에 잘하고 있다, 법적 의무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고 행정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왜 일반적인 철도사고만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위낙에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의견을 달라라고 했는데 2주 이상 이것을 뭉개더니 법안 상정조차 안 되도록 이것을 막아섰어요. 누가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국토부에?

철도국장님도 뒤에서 듣고 계시지요? 국회의 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을 누가 국토부에게 줬습니까? 제가 국토위에 지금 5년째 있는데 이런 상황 처음 봐요. 수정의견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정부 측에 수정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본인들 마음대로 과장, 사무관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습니까?

해서 이 상황들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좀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바라봐주시고 관련해서 이 상정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했던 그 경위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2차관님도 듣고 계시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고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석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2차관님,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경위가 발생했는지 경위하고 자세히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잘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위원장 맹성규 해서 보고하세요.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안 계시면 법률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5)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32)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12.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6)
 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0)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7)

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0)
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6)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5)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5)
23.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2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2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8)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1)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8)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6)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0)
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6)
3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9)
3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8)
3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1)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5)
3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3)
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6)
4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4)
4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6)
4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4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8)
4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7)
4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4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0)
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7)
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5)
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3)
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
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
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6)
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8)
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0)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0)
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0)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1)
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4)
6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6)
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9)
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1)
6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7)
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4)
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0)
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6)
7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8)
7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7)
7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8)
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3)
7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5)
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7)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3)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8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6)
8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7)
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9)
8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8)

- 8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6)
- 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0)
- 8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4)
- 8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1)
- 9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6)
- 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2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1항까지 총 8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일과 9월 23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본 의원, 엄태영 의원, 김도읍 의원, 송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의 위임, 위탁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국토위성 및 위성활용센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 및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토대를 강화함과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 및 규제특례의 적용 범위를 국가시범도시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준용조항의 자구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km² 미만의 공유수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지정·변경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권리와 조경진흥단지의 지정·해제·조성 권리의 부여하려는 것으로 청문 주체에 시·도지사를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4월 12일 자로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가액산정 특례를 다시 신설하고 유효기간을 법집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 권리가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공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 허영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3건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 등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 원인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아홉 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을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및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시행일 등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빙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 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협의매수의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후 사용승인 전 중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동의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동의율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서비스 관련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위임 규정을 국토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일, 9월 24일 총 8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56건을 의결했습니다.

손명수·송기현·이연희·윤재옥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신고 기간 및 양도 기간을 법정 기간인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윤영석·윤재옥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과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등 현행법상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관계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도지사에게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대한 공사 시행 및 변경인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금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항공운수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항공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활용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 창출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민홍철·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사업의 준공 또는 중지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경우 노면전차 선로의 통행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손명수·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운영자의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건태·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한정애·이용우·김건·김희정·이수진·조은희·노종면·문진석(2건), 이연희·문금주·윤재옥·맹성규·윤종균·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소유자 중 일부가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

는 것입니다.

염태영·이강일·문진석·윤종오(2건)·이연희·안태준·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택배서비스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동으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사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대한 면책근거를 신설하며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별칙으로 상향하는 한편 별칙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강대식·손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재강·정준호·손명수·홍기원·이성권·조경태·복기왕·윤종오·차규근·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인력수급·교육훈련 등 항공교통서비스제공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응활동 시 국가 등이 운영하는 무인비행장치에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복기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희정 위원** 한꺼번에 다 묶어서요?
- 위원장 맹성규** 예,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 김희정 위원** 저는 어제 저희 교통소위에서 심사한 항공안전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항공안전법 10개의 법률안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10개 법안 중 5개 법안과 5개 법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재강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복기왕 의원님, 윤종오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른 5건은 기타 실제로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개 법안과 5개 법안은 분리 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2020년 6월에 당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그해에 국회에서 남북관계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은 해에 대법원도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단 살포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 기능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헌판결이 나서 이미 정리가 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항공안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입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위헌판결 난 법안에 대한 것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그 위헌 소지를 없애고 그 법안에서 다루든지 말든지 해도 통과가 될까 말까 한데, 이게 항공안전과 전혀 상관없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배당된 항공안전법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무부도 이 항공안전의 취지에 나오는 항공안전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법익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부처의 공식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을 굳이 저희가 우회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꾸 항공안전 운항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2kg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법익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경기도하고 강화군에서는 1년 전부터 이 행정명령을 시행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어제 저희가 소위 과정에서 확인해 본바 해당 지역의 지자체, 경기도라든지 강화군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항공안전 운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만들기 전과 후가 실제 현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법을 만들고자 합니까?

근본적으로 과거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전국에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익에도 맞지 않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공안전법으로 통과시키면 이 또한 해당 지역주민을 쳐다보거나 이런 법익과 상관없이 북한 눈치만 보는 김여정 아부법이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법도 아니고 국토부 관련 법도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시켰는데 오늘 우리 전체회의에서 다시 반려를 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또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하고 하시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의견을 재판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우리 항공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이 전면 해제가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항공안전법이 교통심사소위를 통해서 이곳 전체회의까지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어제 김희정 위원님께서도 국토부의 업무가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고유하게 목적으로 설정이 된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업무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 논란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나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로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법안소위를 거친 이상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도 접경지역 관련된 지역구 의원으로서 6개 월 이상 관련된 대북전단 살포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때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논란이 있는 시기가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에 노출이 돼서 떨고 있는 접경지역 인근 주민분들에게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서 법익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실래요?

○권영진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한 분씩 한 분씩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더 계속하실 분들 계시나요?

○위원장 맹성규 한준호 위원님 할 말씀 계시다니까…… 위원님 하시고 한준호 위원님하고 끝내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으로 끝내지요.

○권영진 위원 아니, 간사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요, 간사 안 하고……

○권영진 위원 계속하면……

○위원장 맹성규 아니, 간사 안 하고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간사가 안 하십니까?

○위원장 맹성규 예, 간사 안 하고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할게요.

○권영진 위원 우선 국민의힘 간사로서 어제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지 않았었는데 항공안전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합의 처리와 협치의 관행을 깰 만큼 중요한 법이고 시급한 법인가에 대해서 제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지금 이 법은, 항공안전법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항공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 전단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실무자나 또 국방부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는 풍선의 비행물체로 인해서 민간항공기나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 어떤 보고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방부는 2kg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근거 없는 항공안전의 논리를 앞세워서 항공안전법에 이걸 무리하게 담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법이 통과돼도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띄웠던 시민단체들도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문제가 됐던 경기도와 강화군은 1년 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그것도 지금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러고 나니까 다들 이게 결국은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도 남북관계 발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남쪽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남북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드리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법의 목적과 형식에 맞지 않고 여전히 위헌 시비가 있는 법을 여야 합의 없이 꼭 강행

처리해야 되냐, 저는 이 부분들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판결과 우리 위원회의 원래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전통을 다시 살려서 이 항공안전법 법안 처리를, 일방적 처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협치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오늘의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여당 위원으로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 듣고……

○복기왕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기왕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한 분만 하시지요.

○한준호 위원 편한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정리하시지요.

○복기왕 위원 제가 어제 교통법안소위원회로서 이 법안을 심사를 하고 그리고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도 어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우리 국토부 담당 국장이 찾아가서 법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합의 처리를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세 번 정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사이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연기를 시켰었는데, 현재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위현성이 있는 법안을 왜 또 만드느냐라는 지적이신데 그 위현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의견까지 모두가 들어서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다라는 위헌의 소지는 이 법안을 통해서 없앴다,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북 빠라를 날렸던 그 단체들이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또 바뀌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

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2kg 미만의 뼈라와 전단이 항공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갖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실제 작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 정도 북에서 오물풍선이 왔는데 이 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에서 총 172편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항공기 이륙 지연과 또 복행, 회항, 공중 체공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이념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를 순수하게 항공안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안에 대북 뼈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항공안전의 관점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갈등을 좀 잠재우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그리고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면 저는 부수적 효과로서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의견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해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요. 어느 일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된 대로 법안을 의결하고요. 이제 마지막 법안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바로 지금 전단살포 행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계속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취지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9항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8항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1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1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 **염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맹성규** 예.

○ **염태영 위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장 맹성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요?

○ **염태영 위원** 아니요, 지금 의결한 것 다음 건.

○ **위원장 맹성규** 주차장법이요?

○ **염태영 위원** 예.

○ **위원장 맹성규** 지금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4항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염태영 위원** 이의가 아니라 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 **염태영 위원** 저희는 법안이 많이 상정되고 또 그 상정된 내용이 소위가 다르면 내용을 확인할 길이 참 없고 또 어저께 교통소위가 열려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바로 올라와서 내용 확인이 안 돼서 좀 문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세요.

○ **염태영 위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담당 국·실장님 혹시 계십니까?

○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교통물류실장 나왔습니다.

○**염태영 위원**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보통 건축물에 대한 주차시설이 있고 또 별도의 주차전용건축물이 있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오늘 2건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규정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계식주차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이 기계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가 다른 것은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때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 예전에 주차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주차면적이 부족하게 되면 기계식주차를 같이 놓도록 하는 것으로 허용돼 있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특별히 기계식주차장과 관련돼서 전용 주차관리요원이 있지 않은 일반 주차장의 기계식주차는 그것이 흉물이고 상당한 위험물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일반건축에서는 그런 기계식주차를 다 허용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허용을 합니다.

○**염태영 위원** 실제로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현상 때문에 기계식주차를 일반건축물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기계식주차가 허용돼서 나와 있는 일반건축물의 기계식주차가 노후화되면 또 그것을 수리하도록 투자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투자를 하고 그것을 안 하면 또 별과금이나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불합리를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사실 이게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던 취지가 일단 기계식주차장이 효율성도 높을 뿐더러 지금 24년 8월에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는 저촉이 없을 것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염태영 위원** 그래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주차전용 시설로서 관리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건축물에 대한 기계식주차에 대한 현행 불합리와 또 이후에도 아무 의미 없는 지속적인 관리의 부담, 비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은 적어도 법 개정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알아서 이에 대한 시행과 관련돼서 그 단속 권한을 갖고 있고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운용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세요?

○**염태영 위원** 이것은 기계식주차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된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선으로 일단은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 않지만 관리에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과 이행계획을 이후에 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일단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지금 염태영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기계식 주차장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관리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아마 지자체장으로서 경험하신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개정안하고는 좀 상이하더라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방지해 두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명심해서는 안 되고 대안을 어떻게 할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명심하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보완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과 제4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2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과 제4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8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63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4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72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3항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과 7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76항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7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80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9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91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권영진 위원** 제가 아까 토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 아직 이 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처리하지 마시고 여야가 다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퇴장한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앞으로 원활한 상임위가 힘들어질 겁니다.

○**복기왕 위원** 서로……

○**권영진 위원** 간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복기왕 위원** 서로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오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이 바뀝니까? 위헌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 맹성규**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한준호 위원**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윤석열 정부 산하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23년 9월에 관련된 현재 판결이 났지만 그 당시 국토부가 의견을 어떻게 냈나 하면, 윤석열 정부 산하의 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2kg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국토부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여야 간에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가 바뀌고 안전 문제, 그러니까 특히 국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서로 달라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치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국토부가 밝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오늘 처리하시고, 항상 법이라는 게 선행을 해야지 후속적으로 쫓아가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또 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말씀하셨듯이 모든 대북전단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킬로수라든지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가 협행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딱 대북 전단만 금지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온 것 보면 또한 항공안전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

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2kg 이하라도 금지를 할 경우에 기상 관측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내용도 다 금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국방부와 기상청 등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니, 항공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정말 끝까지 주장하시려면 그런 것도 다 제재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명확하게 콕 찍어서 항공안전에 대북전단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동안 또 지리하게 국가행정이 낭비되는 일을 왜 반복을 하시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봅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지요.

○윤종군 위원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김여정 눈치 보기야, 무슨? 윤석열 눈치 봅니까, 그러면?

○위원장 맹성규 됐습니다.

○윤종오 위원 무슨 눈치를 봅니까? 말을 갖다 해도……

○한준호 위원 윤석열 눈치 보면서 못한 것 아니야, 그때.

○천준호 위원 이념적으로 하지 말자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면서요.

(장내 소란)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윤종오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권영진 위원 나갑시다.

○천준호 위원 적당히 좀 해야지, 너무하는 것 아니야?

○한준호 위원 본인들 정부 때도 이것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들이.

○천준호 위원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말을 막 해.

○김희정 위원 막 한 적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말 막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윤종군 위원 그런 표현은 좀 삼가 주세요, 국회에서.

○김은혜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천준호 위원 동료 위원들을 뭐 김여정 편으로 만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말을? 협치를 얘기해, 그리고?

○김희정 위원 언론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그러면 윤석열 눈치 봐요? 윤석열, 김건희 눈치 봅니까?

○한준호 위원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정쟁으로 만들지 말고! 왜 상황을 정쟁으로 만들어요, 자꾸?

○천준호 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윤종군 위원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천준호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김희정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 법 아니잖아요!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한준호 위원 본인들이 주장했던 법이에요! 좀 살펴보고 나서 주장해.

○천준호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색깔론이나 퍼지 말고 반성이거나 좀 하세요, 반성!

○윤종근 위원 윤석열 눈치나 그만 보세요!

○김희정 위원 주무부처 장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항공안전법 무관합니다!

○한준호 위원 항공안전과 관련 있다고 본인들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

○천준호 위원 어디서 김여정 타령이야, 김여정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뭘 협치야, 그러고서!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맹성규 이 문제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셨는데요.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한다고 해서 좀 더 진전될 수 있거나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만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안전법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 목적에 부합합니다. 항공안전법의 목적이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의결하고자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소위 과정에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단 등 살포 목적에 무인자유기구를 직접 금지하는 방식을 수정하였고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적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오늘 저희가 다른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장님,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자동차관리법 등 총 8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

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6인)

성명	직업	신청이유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주택공급, 건설정책 등 구조적 문제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협회장	해외 ODA 사업 관련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 관련 진상규명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12. 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 SDI 대표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관련 현안질의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택시영업 독과점, 갑질 등 및 대통령실 특혜 의혹 배회운행 부당청구 등	10. 13(월) 국토교통부 등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건설사고 증가 등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일방 파기 문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		
정경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 건설 사장	건설사고 증가 등		
이해욱	DL 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주) 대표			
윤종수	지쿠 GCOO CEO	미성년자 운전면허 도용	10. 16.(목)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	택시요금 정산 수수료 결제 관련	10. 20.(월) 경기도	
박선순	(주)다원시스 대표	철도차량 제작 및 납품	10. 21.(화)	

성명	직업	신청이유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지연, 열차 납품 관련	한국철도공사 등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철도차량 입찰 담합, 대기업 갑질 등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	전세사기 물건 경매 관련	10. 23.(목)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김학규	전 한국부동산원 원장	부동산 통계조작	10. 23.(목) 한국부동산원 등	
조옥래	(주)DSDL 회장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관련		
박종혁	인천대교 주식회사 대표	민자대교 수의 관련		
방종구	신공항 하이웨이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건설사 대상 갑질횡포	10. 29.(수) 국토교통부 등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등		

참고인(6인)

성명	직업	신청이유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신장수	금융위원회 공무원	은행이 감정평가사법을 우회해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질의		
김호덕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부산 이사장	카카오택시 배희영업 등 부당 수수료 부과	10. 13.(월) 국토교통부 등	
김준언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대전 이사장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 등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 요구 사항 청취	10. 13.(월) 국토교통부 등 10. 20.(월) 서울특별시	
손형관	유림건설 대표	건설사 대상 갑질횡포 피해기업	10. 29.(수) 국토교통부 등	

○출석 위원(27인)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맹성규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신영대 안태준 염태영 염태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이건태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천준호 한병도 한준호 황운하

○첨가 위원(3인)

김도읍 김종양 문진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염정희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항공정책관 김영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박재희

사회 외록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리 꽈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 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연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5. 8. 29.

○의안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6)

8월 20일 회부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8)

이상 2건 8월 21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1.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1)

8월 22일 회부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9)

이상 2건 8월 25일 회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2)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2025. 8. 25. 이현승 의원·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이상 9건 8월 26일 회부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26.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이상 5건 8월 27일 회부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3)

이상 6건 8월 28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8.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2)

이상 5건 8월 29일 회부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7)

이상 3건 9월 1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이상 2건 9월 2일 회부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9)

이상 3건 9월 3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8)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2)

이상 4건 9월 4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7)

이상 3건 9월 5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25. 9. 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4)

이상 5건 9월 8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8.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5)

이상 6건 9월 9일 회부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8)

이상 3건 9월 10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0.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4)

9월 11일 회부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8)

9월 12일 회부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9)

9월 16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9. 16.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0)

이상 4건 9월 17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0)

이상 4건 9월 18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1)

이상 4건 9월 19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0)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9. 19.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9.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7)

이상 10건 9월 22일 회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3)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9. 2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9)

이상 4건 9월 23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0)

이상 2건 9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0)

8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8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이상 2건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1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이상 2건 8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9. 4. 곽규택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이상 2건 8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빙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8.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6)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5.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8)

9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16.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7)

이상 2건 9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9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5703호	2025. 8. 12.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35708호	2025. 8. 14.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제35717호	2025. 8. 26.	대통령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13호	2025. 7. 29.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14호	2025. 8. 1.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15호	2025. 8. 5.	부령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516호	2025. 8. 8.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517호	2025. 8. 8.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18호	2025. 8. 8.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19호	2025. 8. 14.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0호	2025. 8. 14.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1호	2025. 8. 14.	부령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25-114호	2025. 8. 28.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1호	2025. 8. 11.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2호	2025. 8. 13.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14호	2025. 8. 13.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68호	2025. 8. 29.	입법예고